

대흥면행정복지센터 정기감사 결과보고

《 감사개요 》

- 감사기간 : 2019. 9. 25.(수) ~ 9. 27.(금)(3일간)
- 감 사 반 : 7명(감사팀장외 6명)
- 감사범위 : 2017. 9월 이후 면정업무 전반
- 중점감사내용
 - 세출, 물품관리, 각종 공사 적법처리 여부
 - 복지, 농·축산업, 산업분야 등 대민업무 추진사항 등

■ 감사결과

(단위 : 건)

일련 번호	소 관	제 목	행정상 조치			비고
			계	시정	주의	
계		25건	19	6	13	
1	총무팀	회계관직 공무원 직무대리 미지정	1		1	
2	총무팀	일·숙직근무 시간 미준수	1		1	
3	총무팀	급량비 지출 부적정	1	1		
4	총무팀	강사료 소득세등 원천징수 미이행	1	1		
5	총무팀	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	1	1		
6	총무팀	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	1		1	
7	총무팀	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	1		1	
8	총무팀	민원서류 접수 소홀	1		1	
9	총무팀	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	1	1		
10	총무팀	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	1		1	
11	총무팀	계속도로점용료 부과관리 소홀	1	1		
12	맞춤형 복지팀	의사무능력(미약)자의 급여관리 업무추진 소홀	1		1	
13	맞춤형 복지팀	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 소홀	1		1	
14	맞춤형 복지팀	혼자 사는 저소득가구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업무추진 소홀	1		1	
15	맞춤형 복지팀	도로점용허가(신고)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관리 소홀	1	1		
16	산업팀	3농 정책 특화사업 공모계획 알림업무 소홀	1		1	
17	산업팀	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홍보계획 알림 업무 소홀	1		1	
18	산업팀	구제역, AI 및 동물용의약품 관련 소책자 배부 알림 업무 소홀	1		1	
19	산업팀	2019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알림 및 대응 철저 업무 소홀	1		1	

□ 주요지적 사례

■ 회계관직 공무원 직무대리 미지정

- 「예산군 재무회계 규칙」 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제4항에 의하면 『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,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.』라고 규정 되어 있음.
- 대흥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회계관직 공무원이 휴가 등으로 업무를 못하는 중에도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.

■ 일·숙직근무 시간 미준수

- 「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 및 「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르면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외 3시간을 근무 후 귀가 근무자로 되어 있다.
- 대흥면에서는 총 9건의 일숙직 근무자가 일직근무시간인 09:00~12:00 숙직근무시간인 18:00~21:00을 미준수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■ 급량비 지출 부적정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및 「초과근무실태 자체점검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통보」(총무과-22456, 2016.08.17.)호에 따라 초과근무자의 급식 시 2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에 한해 급식이 가능하며 관외 출장자에게는 급식 실시가 불가하게 되어 있다.
- 대흥면에서는 총 2건의 2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급식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.

■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

- 「소득세법」 제127조에서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및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13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100분의 3, 기타소득은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대흥면에서는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, 주민세 등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.

■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

- 「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 제1항 <별표 1>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의하면 각종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, 도급계약, 용역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공급 가액의 2.5%, 물품구매, 수리·제조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 공급가액의 1.5%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총 3건의 공사 및 용역 계약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거나 기준 이하의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한 사실이 있다.

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〔별표1〕규정에 열거된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.
- 대흥면에서는 총 5건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르면 『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

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하고,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.』고 규정하고 있다.

- 대흥면에서는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6건 1,299천원의 공용차량 주유비 결제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으로 유류구입 비용에서 3.04% 현장할인과 1.1%의 캐쉬백 적립을 못 받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■ 민원서류 접수 소홀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(민원의 접수)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(민원문서의 표시)에 따르면 문서의 접수·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며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민원문서 표시인 등을 날인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■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

-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, 계약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단계별로 감독을 하여야 하고, 공사 중 현지 여건과 설계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67조(설계변경 관리)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「2019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대흥면 지곡리 마을안길 정비공사」를 시행하면서 한쪽 면에만 거푸집 물량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양쪽 면으로 산정하여 18㎡(공사비 985천원)를 과다하게 반영하였고 준공 시까지 설계변경 등을 통해 감액 조치 없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.

■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
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(2017. 7. 31. 행정안전부훈령 제2호) 제6조에 따르면 시설부대비(401-03)는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,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대흥면에서는 총 2건의 구입물품이 복사용지, 외장하드디스크로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비를 시설부대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.

■ 계속도로점용료 부과관리 소홀

- 「도로법」 시행령 제71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 및 반환) 및 「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」 제7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시기)에 따르면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,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,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·징수해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2018년도 도세분·군세분 도로점용료를 4월, 11월에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, 2019년도 군세분 도로점용료 1건, 58,120원을 감사 당일까지 미부과하여 적기 세수확보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.

■ 의사무능력(미약)자의 급여관리 업무추진 소홀

-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「의사무능력(미약)자의 급여관여」에 의하면, 의사무능력(미약)자의 급여관리는 반기별로 급여통장 관리 및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2018년도에는 2명, 2019년도에는 1명의 의사무능력(미약)자에 대하여 수급자 생활실태 등을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하나 급여 관리자 지정 및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

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사업계획 작성 및 운영 소홀

- 「대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」 제9조(회의) 규정에 의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「2018년~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」에 따르면 『읍면동 협의체 연간 사업 계획서』를 작성해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총 9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6회만을 개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「읍면동 협의체 연간 사업 계획서」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2018년도 연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■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업무추진 소홀

- 「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(p.372~374)」에 의하면 저소득 단독가구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사업 추진계획을 미 수립하는 등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
■ 도로점용허가(신고)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관리 소홀

- 「지방세법」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 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총 15건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동 허가사항에 대하여 세무부서에게 통보하지 않아 등록면허세 15건, 216,000원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.

■ 3농 정책 특화사업 공모계획 알림 업무 소홀

- 농정유통과-9183(19.5.14), 산림축산과-18076(19.5.14) 호에 따라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 정책 특화사업 공모 계획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홍보해야 한다.

- 대흥면에서는 농업인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이장 등에게 공문서를 시행해야 함에도 추진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■ **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 홍보계획 알림 업무 소홀**

- 농정유통과-9619(19.5.22) 호에 의거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농업환경실천사업」의 3년차 추진사업에 관해 농업인에게 홍보해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농업인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이장 등에게 공문서를 시행해야 함에도 추진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■ **구제역, AI 및 동물의약품 관련 소책자 배부 알림 업무 소홀**

- 산림축산과-152(2019.1.3)호에 따라 구제역 예방리플릿 130부, 거점소독시설 안내 리플릿 12부, AI 차단방역 수칙 리플릿 20부,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리플릿 170부 등 332부에 대하여 축산 농가별 배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배부계획을 미 수립하는 등 관련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■ **2019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알림 및 대응철저 업무 소홀**

- 산림축산과-6048(19.2.17) 호에 따라 정월대보름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건조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특별대책 시행을 홍보해야 한다.
- 대흥면에서는 홍보를 위해 각 마을 이장 등에게 공문서를 시행해야 함에도 추진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